의 안 번 호	제98호
의결연월일	2023.03.16.

-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3. 03. 예산군수

○ 회 부 일 자 : 2023. 03. 07.

○ 상 정 일 자 : 2023. 03. 16.
제28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〔경제과장 : 장기혁〕

가. 제안이유

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

○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 개정

-(현 행) 「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조례」

-(개정안) 「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

○ 전통시장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○ 전통시장의 인정 및 관리에 사항(안 제4조~제7조)

- 전통시장의 기준, 인정취소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

○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2조)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, 신청, 취소 등에 관한 규정

○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~제23조)

- 상인회 등록, 정관,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

○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~제41조)

- 시설물 소유권,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김영순)

○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「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제9장 권한의 위임까지 상위법 기준에 따라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(章) 단위로 구분하였고

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통시장의 인정·특성별 육성,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시장관리자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검토결과 본 조례는 법률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생　　략

5. 토 론 요 지

○ 없　　음

6. 심 사 결 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　　음